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500 |
|----------|-----|

2024. 9. 12.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23. / 김동훈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 2024. 8. 2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9.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유해성분 등의 노출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에 근거한 “어린이놀이기구” 재정의(안 제2조)
- 유지관리계획 규정 정비(안 제3조)
 - 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 구체화
 - 보건위생을 위한 검사 및 해소 대책 구체화(모래장, 바닥재 등)
 -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 안전 및 유지관리 조치 의무사항 정비(안 제 7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유해 성분 등의 노출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